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54 호

2005년 9월 27일 화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82호(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83호(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11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84호(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 15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85호(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 17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49호((긴급)용역입찰공고(벌터고개공원조성공사폐기물처리용역)) 1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50호((긴급)용역입찰공고(시청앞미래광장부근도로정비공사설계용역)) 2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53호(차량초과에따른자동차말소등록예고) 24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조 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 782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 소 년 보호 및 육 성 에 관 한 조 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1조”로 하고,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동법 제22조”를 “동법 제27조”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하고 동법 제47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1장 중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

“**제9조(구성) 지도위원의 수는**”을 “**제9조(구성)① 지도위원의 수는**”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동장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관할 청소년지도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는 삭제한다.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7조는 “제29조”로 한다.

제3장 청소년참여위원회 각 조항(제16조 에서 제2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제16조(기능) ①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남동구 청소년 정책, 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사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2. 다른 시·군·구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와의 업무 협의
3.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제17조(구성)①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6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하고 총무와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간사를 두며, 지도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을 당연직으로 한다.

⑤청소년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전문위원 1인을 고문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제18조(자격)①「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만9세~만24세 이하인 자로 한다.

②참여위원회는 남동구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소속학생 또는 거주하는 중·고등학교·대학생 등으로 구성한다.

제19조(직무) ①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고문위원과 지도간사는 참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조언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20조(임기)①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고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지도간사의 임기는 당해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①청소년 관심분야·특기·거주지 등을 감안하여 기획, 문화, 교육·홍보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한다.

②분과위원회 구성은 10명 이하로 하고 참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별 연간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의 수립과 조사, 연구 청소년들의 의견수렴활동을 실시한다.

제22조(위원 선발기준) ① 본인희망자, 학교장추천, 청소년단체추천, 동장의 추천 등을 우선순위로 선발하며 신청형식은 별표2, 3, 4에 의한다.

②다수의 청소년이 접수될 경우 구청장은 필요시 면접관을 지정하여 선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위원 위촉) 위원으로 선발된 청소년 및 고문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4조(위원 해촉)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전학 등으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퇴학·형사처벌·사회문제 야기 등)하였을 때
4.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해촉하고자 하는 의결을 하였을 때

제25조(회의 등) ①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임시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에 개최한다.

③참여위원회 운영은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참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회의록 관리) ①참여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내용을 기록·유지 및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여위원회는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활동지원 사항)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활동이 적극적인 위원은 구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등에 참여 기회를 우선 제공
2. 청소년정책개발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년1회 수련대회 개최
3. 참여위원회에서 청소년정책개발을 위하여 재·행정지원 요구시에 적극 협조

제28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를, 고문에 대하여는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

남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신청서(제24조 관련)

이 름	(한자 :)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 속	학교 학년 반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E-mail	@		
참가동기 (지원동기)	※ 지원하게된 동기나 포부 등을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상기 본인은 이상과 같이 남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붙임 1. 서약서 1부

2. 보호자동의서 1부 끝.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관:

직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 별표 3 】 (제24조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남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품위를 유
지하고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
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 별표 4 】 (제24조 관련)

보호자 동의서

학교(주소)명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위 청소년의 보호자로서 「남동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취지를 이해하고, 위 청소년이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함을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보호자 주 소 :

성 명 : (인)

청소년과의 관계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 제안이유

-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청소년 인권신장 보장은 물론 청소년육성 정책결정 및 집행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1조)
- 종전 제14조의 규정된 사항을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지도위원과 관할동장과의 유기체계 구축토록 개정(안 제9조 제2항)
-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는 조항 신설
 - 위원회의 기능, 자격,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에서 제18조)
 - 위원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소관사항별 분과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6조 제2항, 제21조)
 - 위원 선발기준과 위·해촉에 관한 규정(안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
 - 위원회의 활동지원 사항 규정(안 제27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 783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7조(운영) 제1항중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
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를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
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중 시설관리는 동장
이,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 또는 위원회(이하 ‘동장 등’이라 한다)
에서 한다”로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제1항중

“구청장과 동장은”을 “구청장과 동장 등은”으로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제3항중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의 결정은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를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의 결정은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로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제5항중 후단의 “그 기준과 감면 비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그 기준과 감면 비율등은 별표로 정한다”로 한다.

제12조(주민참여) 제1항중 “구청장과 동장은”을 “구청장과 동장 등은”으로 하고, 제2항중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를 “구청장 또는 동장 등에게”로 하며, 제3항중 “구청장 또는 동장은”을 “구청장 또는 동장 등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사용료 징수범위 및 요율표 (제10조 관련)**1. 징수범위와 요율**☐ 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시설명	용 도	사용시간	사용료	기준	비고
다목적홀	강연, 토론·발표회 등 전용 사용시	월~금요일 09:00~18:00	냉·난방사용시 15천원이하/1시간 (미사용시 10천원이하)	1시간	사용료는 1회 5시간 이내 기준 (초과시간 무료)

☐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이상	
문화, 취미, 교양강좌	1개월	10천원 이하	15천원 이하	20천원 이하	25천원 이하	강좌별 재료비는 본인부담
생활체육	"	15천원 이하	20천원 이하	25천원 이하	30천원 이하	

2. 감면 기준과 비율☐ 자치센터 시설 사용료**전액 감면**

- ① 구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 ④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 ①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공연
- ②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

☐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50% 감면**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② 장애인 및 그 가족
- ③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제안이유

-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자치위원회 중심의 민간 주도로 전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성 확보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료운영을 통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자립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안 제7조(운영) 제1항 ⇒ 관리·운영주체 분리
자치센터의 시설관리는 동장이,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 또는 위원회에서 한다 (현행 동장이 관리·운영주체)
- 안 제10조(사용료 등) 제3항 ⇒ 사용료등 징수
사용료 등(사용료,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을 조례로 정함 (현행 규칙으로 위임)
- 안 제10조(사용료 등) 제5항 ⇒ 사용료등 감면
사용료 등(사용료, 수강료)의 감면기준과 감면비율 등을 조례로 정함 (현행 규칙으로 위임)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 78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전액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2005. 7. 1 인천항만공사 출범과 관련하여 항만공사의 설립·운영의 조기정착 및 공익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3년간 재산세를 전액 면제(안 제23조의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 78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공시송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 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고 인터넷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공시송달 게재 방식을 개선·보완하여 구세부과징수사무를 적법하게 운영토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행 공시송달 게재 방식에 인터넷 게재를 추가하여 관련 조문 변경 (안 제17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5 - 649호

(긴급)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벌터고개공원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 예정물량 : 폐콘크리트 2,111.63톤
- 용역금액 : 53,741,000원 (추정가격 41,830,680원 부가세 4,183,070원, 건설(매립) 폐기물처리비 7,727,250원)
- ※ 기초금액 : 46,013,750원입니다. 단 낙찰예정업체는 건설(매립)폐기물처리비용까지 합산하여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립지 반입료는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5. 09. 26(월) 09:00 ~ 2005.09.30(금) 16:00
- 입찰진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5. 09. 30(금) 17:00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기간 : 2005. 09. 26(월) ~ 2005. 09. 30(금) [남동구청 도시정비과]
-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방법 :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 단,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인천, 서울, 경기지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집·운반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기한 [2005.09.30(금)16: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가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설계금액중 건설(매립)폐기물처리비를 제외한 기초금액(46,013,750원)의 $\pm 3\%$ 범 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토록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의 87.745%인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제한적)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
- 입찰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62호(2005.2.3)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5일이내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7. 낙찰자 통보 : 적격심사 후 즉시 통보**8.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 행하므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 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 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G2B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 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의 2.5% 상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 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09월 23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 650 호

(긴급)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시청앞 미래광장부근 도로정비공사 설계용역 가 용역개요

- 위치 :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앞 미래광장부근
- 과업내용
 - 보행자 전용도로 : B = 6 ~ 10m L = 875m
 - 보행자 우선도로 : B = 8m L = 477m
 - B = 10m L = 456m
 - 기존 보도 및 시설정비 A = 53,595㎡
 - 구월동 로데오거리 및 2차구간 기본구상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설계금액 : 66,495,000 (※추정가격60,450,000원, 부가세6,045,0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5년 09월26일(월) 09:00~10월05일(수)10: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5년 10월05일(수) 11: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과업지시, 설계내역서, 도면 등은 우리구청 건설과 담당자 성정은
〈 ☎453-2572 〉에게 문의 및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갖추고 있
어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설부문(도
로, 도시계획)신고를 필하고 해당기술자 보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이어
야 합니다.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
규칙 제44조 규정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제한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차치부예규 제162호 2005. 2. 3)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5일이내로 제출
- 적격심사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차치부예규 제162호 2005.2. 6) 제4조에 의한 서류(①적격심사신청서,②적격심사자기평가및심사표,③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④재무제표)

6. 낙찰자 통보예정일 : 적격심사 후 즉시 통보

7.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66,495,000)의 ±3%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 『예정가격』의 87.745를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전

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차용자, 대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 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 년 09 월 24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653 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 상 이해 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5. 10. 10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5. 9. 26 ~ 2005. 10. 10(15일간)
2. 대상 자동차

신청대상차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달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인천80다4609	김완규	관교동 467-6	인천지방법원 (97카단577)	김기충	인천.부평.부평동 70-125 동아@ 28-606
인천7노4453	전홍기	서울.은평.갈현동 12-157	인천지방법원 (2000카단15160)	이충섭	서울.양천.목동 324-153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3977)

2005. 9.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